

바른 감사 바른 시청



완산구청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완산구청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0. 7. ~ 10. 17. (8일간)
- 감사범위 : 2012. 9월 ~ 2014. 8월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외 4개반 15명(시민감사관 2명 참관)
- 감사내용 : 완산구청 업무 전반

□ 감사방향

-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과 대안제시
- 예산낭비, 비효율, 비리유발 요인의 제거 등 제도개선에 역점
-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실시
-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최대한 관용조치
- 감사실시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홍보
- 중복감사 지양 : 전라북도, 안전행정부 등 상급기관 수감사항 제외

□ 감사결과 : 총 57건

계	행정상 조치(건)			현지 시정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분상 조치(명)		
	소계	시정	주의		계	감액	추징	회수	기타	계	훈계	징계
57	57	35	22	-	83,174	24,774	36,416	21,933	51	10	10	-

Ⅱ 지적 사항 요약

1. 병가사용자 등 연가가산 산정 소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과, ♀♀과, ◆◆과에서는 타부서에서 전입한 직원에 대한 연·병가 사용내역 및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직위해제된 자 및 병가사용자에게 연가일수를 가산 산정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소홀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당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 건설과에서는 하수도준설원 동절기 작업복 등을 구입하면서 내부품의 없이 20○○. ○○.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 ○○. ○○. 내부품의 후 20○○. ○○. ○○일 지출원인행위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 소홀

3.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과장까지 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 행정지원과에서는 카드사용내역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있었으며, 생활복지과에서는 2014. 2월부터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유료직업소개소 점검보고 및 보험가입 관련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도 매분기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총 00건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 결과는 매반기마다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담당자가 시스템 등록으로 해당기관에 보고 하였으며,
-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66개 업체 중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0개 업체는 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등록관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0개 업체에 대하여 경고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

5.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부과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따라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 경제교통과에서는 간판(돌출) 도로점용료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000건을 부과하면서(2014년-00건, 2013년-00건, 2012년-00건) 허가일로부터 1월 ~ 6월이 경과한 후에야 한꺼번에 징수결의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 과태료(옥외광고물)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징수결정 통지) 제1항에 따라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000건 000,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00건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 0,000천원에 대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전산입력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음.

7. 사이버민원(신문고, 120번) 지연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 사이버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 연장 등의 사유없이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4일~5일 지연처리 하여 민원업무를 소홀히 함.

8. 생활민원(120번등) 처리실태 관리소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는데,
- 생활민원 관리대장의 정리가 미흡하여 접수민원이 부서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기한내 처리(회신)되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지 않는 등 접수된 생활민원의 관리를 소홀히 함.

9. 문화·체육시설 실태점검에 관한사항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은 점검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분야 담당자를 참여시켜 내실있는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하나, 등록(신고)담당 부서 인원으로 구성된 형식적 점검위주로 실시되고 있었음.
-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제출하여야 하는데, ●●스포츠(완산구 ㉠㉠㉠) 외 0개 영업장이 보험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 촉구통지 등 사전 행정지도가 없어 11일에서 4개월까지 누락되었던 사실이 있음.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시설 건축물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 2013년 및 2014년도 신축건물 및 단독주택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 0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00,000원 부과 누락

11. 청소차량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손괴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의무 등의 규정이 있다.
- 그런데 청소차량 00여대의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면서 동종 업종 보험회사의 타사 견적이 없고, 보장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없이 단독 견적을 받아 내부품위만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1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1084호) 제34조(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매년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매년 1월말)토록 되어 있음에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00개소)로 지정된 업소 중 에서 2013년 1월까지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00개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등 자율점검업소 관리 소홀

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1084호)

제6조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 사업개시 10일 이내에 현지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 2013년 및 2014년도 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개시 점검기일(10일)을 넘겨 점검을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소홀히 함.

14. 폐기물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올바르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미입력시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 ◆◆환경이 2013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실적을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명령 없이 내버려 두었음.

1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나, 관내 00개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환경위생과 내에서 모니터링 하면서도 ●●●●주차장 등 13개소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3년도부터 단속실적이 전무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16. 청소관련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에 차량배차신청,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차량운행일지는 당일의 운행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차량 00대를 운영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결재도 한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17.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 체결 소홀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관리사무소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하고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3. 12월에 0개 아파트, 2014년도 1월 0개 아파트 등 0개 아파트에 대해 위탁징수 협약을 맺지 않고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징수 하였음.

18.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동 조례 “별표1”과 같으며 수수료는 납부필증 또는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하고도 2013년 00건(000천원), 2014년 00건(000천원)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함

19.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 처리 지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190건의 민원 중 6건의 민원을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소홀하였음.

20.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에 관한 사항

- 「2014 자활사업 안내(Ⅰ)」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만료 6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명단을 동에 제공하고, 동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근로능력 재판정을 하여야 하나
- 감사일 현재 00명이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그 중 00명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0명에게만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나머지 00명에게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만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긴급지원의 금전 또는 현물이 기초생활 급여보다 많을 경우 당월 기초생활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적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여 상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 2014년1월부터 8월까지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 등 0명에 대하여 000,000원을 중복지급하고 ○○○ 등 0명에게 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22. 의료급여 대지급금 체납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대지급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 1996년 7월에서 2006년 5월 중에 대지급한 후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 0명에 대하여 매년 독촉장을 교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독촉장만

교부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의료급여 대지급금 체납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월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2013 자활근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 까지만 지급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한 월차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6일을 초과한 월차에 대하여 참여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 2013년 실시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복지도우미형사업 참여자 00명에 대하여 6일을 초과한 월차수당 0,000,000원(00일분)을 지급하였고, 근로유지형사업 참여자 00명에 대하여 6일을 초과한 월차수당 0,000,000원(000일분)을 과다 지급하였음

24.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환수할 경우, 환수 결정전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처분 통지서에는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 2012년 0건 00만원, 2013년 00건 000만원의 환수통지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5. 평화2동 건강나라~대정초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사항

- ●●과에서는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장비유도수)를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0,00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도로개설공사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에 반영된 석면(스레트)철거품을 공사에 중복 반영하여 공사비 0,000천원 정도가 과다 계상되었으나,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사항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착공시 항목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을 기초로 적정사용 여부를 면밀히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신동 한우주택 옆 소로개설공사 외 0건에 대하여 도급자가 사용불가 내역인 공사안전간판, PE드럼, 안전시설비 등을 구입하여 제출 하였음에도,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0,00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27. 소로개설 및 하수도정비공사에 관한사항

- ■■■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하여 거푸집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거푸집(66㎡)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거푸집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 계상함
- 또한 ■■학교 및 ㉠㉠㉠㉠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배수관(오수관) 포설시(L=128m)을 위하여 기초모래를 포설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모래를 포설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28. 실정보고 승인절차에 관한사항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 중화산동 ●●●● 옆 소로개설공사 외 0건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하여 방침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는 득하였으나, 시공업체에 실정보고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소홀히 함

29.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사항

- ⅢⅢ교 보수공사를 특허공법(고강도 섬유지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 방법)으로 공사하면서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품질관리를 단계별로 검사하고 규정 수량이 사용되고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편을 시험하는 등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는데도 단계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음.
- ⅢⅢ교 슬래브 하부(표면처리), 교대 균열보수 하기 위한 공중비계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중비계설치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면적(44.10㎡)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기에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데 0,000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고 집행하였음.

30.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고,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 발급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건설과에서는 2014년 9월말 현재 0,000건, 000,000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000건 000,000천원에 대해서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0,000건 000,000천원에 대하여는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소홀히 함.

31. 불법 도로점용 단속 소홀

- 불법점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함.

- 감사기간 동안 도로관리 소관 도로부지에 대하여 샘플 실태조사(■동 3가, △△△△2가)를 실시한 결과 불법도로점용에 대해 ■동3가 ㉠㉠주유소 도로무단점유와 △△△△2가 ㉡㉡㉡㉡주유소 차량 진·출입로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변상금 0,000천원을 미부과 하였음.

32. 무단점유 국·공유재산(도로,하천)관리 소홀

- ■로 등 ~ ㉢㉢동 등 61필지에 대하여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점유면적 110㎡의 국·공유재산을 진입로 등으로 적법한 절차 이행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도,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0,000천원 미부과
- 또한 ㉣㉣동 등 10필지 9,951㎡에 대하여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답 등으로 적법한 절차이행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금 0,000천원을 미부과 하는 등 무단 점유자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33. 주민참여감독대상자 감독조서 미작성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로서 주민참여 대상공사(00건)에 대하여 주민감독자를 위촉하여 운영 하거나 또는 일부 미운영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미작성 함

3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검토 및 추진소홀

- 중로 ●●호선 도로개설 등 0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면상과 실제 시공 상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정보고 하고, 이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변동 사항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하여야 하며, 잘못 시공된 구조물에 대하여 재시공 하여야 하고, 또한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전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총00,000천원 상당을 과다하게 집행함.

- 중로●●호선 도로개설사업

- 도로와 인접 가옥의 높이차로 인하여 일부구간(11개소, L=163m, NO.4+0.0)을 L형 옹벽으로 설계 반영 하였으나 일부 종단구배 조정으로 절토 구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L형 옹벽을 일부만 설치(1개소, L=63m)해도 가능하며 인도 옆 구간에 절개면이 발생하여 일부구간을 보강토 옹벽으로 L=30m 정도 신설하여 시공 가능하며 L형 옹벽에 대한 일부 미설치로 인한 설계조정하면 00,000천원 상당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 조정, L형 옹벽 조정구간에 보강토 옹벽 일부 신설하여 신규로 적용하면 0,000천원 상당 증가되므로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함으로 조정
- 도로경계석 구간을 현지 확인한 결과 도로경계석 후면과 기존 가옥 사이가 협소하여 거푸집시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거푸집 양면에서 한면만 시공하여 감액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거적덮기의 시공방법을 임의대로 결정하고 당시 설계상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소로3-1134호선 31㎡, 3-1135호선 333㎡에 해당하는 초류종자 살포 재료비를 삭제 및 비닐끈 미설치하여 000천원 상당 과다하게 지출되어 회수

-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보차도 경계석 기초 거푸집을 양면으로 시공(108㎡)하도록 되어 인접 토지소유자가 식재해 놓은 조경수목의 피해를 우려하여 거푸집 설치 시공을 반대함에 따라 부득이 시공 못한

부분(13m²)에 대하여 000천원 상당 공사비 감액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집수정이 L형측구 밖으로 돌출 시공하는 등 맨홀 및 집수정 설치가 잘못 시공되어 재시공
- ●●●동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자주변 바닥 콘크리트 포장거푸집 설치를 33m²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기계양대 유로품을 4면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자주변 해당하는 거푸집은 미설치(17m²)하였고, 국기계양대 4면중 3면만 설치하고 1면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당시 설계물량과 다르게 시공하여 000천원 상당 회수

35. 건설공사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포장공사 등 0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첨부되었으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출입금지, 공사현장에 설치한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현장 경계표시를 위한 울타리 및 현장 경계 횡스,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라바콘, PE드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하여 총 0,000천원을 회수
- 거마평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등 00건과 관련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없는 단순한 청소작업에 소요된 금액(빗자루, 쓰레기봉투)과 일용근로자의 청소 인건비등으로 집행하는 등 총 0,000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

36. 건설공사 설계검토 및 추진소홀

- ▷▷동 ▷▷천변로일원 인도정비공사 등 0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실정보고 하고 이후 사업에 대해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준공 전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총 0,000천원 과다 지급

◆ ▷▷동 ▷▷천변로일원 인도정비공사 : L형측구 설치함에 있어 조합해서 거푸집(유로폼)과, 신축이음과 비닐깔기를 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에 의하면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폭 양면에 합판거푸집을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는데, 거푸집(양면)을 L형 측구 앞 부분 거푸집은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후 L형측구 설치 하였으며 또한 조합으로 시공해야 할 신축이음과 비닐깔기를 미시공 하였는데 0,000천원 상당 과다 집행함

◆ △△△로 인도정비공사 : L형측구설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L형측구 설치함에 있어 거푸집(유로폼,55m²)을 설치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에 의하면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폭 양면에 합판거푸집을 설치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는데, 거푸집(양면)을 L형측구 앞 부분 거푸집은 설치하지 않고(24m²) 콘크리트 타설 후 L형측구 설치하였므로 000천원 상당 과다 집행함

37. 건축물의 대지 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0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 완산구 효자동2가 0000번지상의 대지법면 경사도는 건축허가시 1 : 1.8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확인결과 대지 비탈면 경사도가 1 : 1.4로서 토사로 성토되어 건축물의 대지 안전규정을 위반함

38.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진출입로 설치에 관한사항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면서, 차량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진출입할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저해하므로 점용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동 1가 이○○의 건축허가 협의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함

39. 전문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 풍물교실 운영공간 조성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 공사내용이 우수배수로 설치, 수장공사, 창호 및 잡철공사, 도색공사 등이 복합되어 있고, 실내건축 공사업이 시공할 수 있는 수장공사 내용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미만이므로 해당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된 (주)디자인뱅크와 계약함

40.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제1호 마목 10)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2. 6. 1. ◆◆동 외 1필지상에 ○○○가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신청한 단독주택 신축 4건에 대해 전용허가(협의)하면서 4건중 3건은 기존도로가 없으므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계획상 도로를 인정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함

41. 농지전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농지전용심사를 하면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폐율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 ●●동 ○○○외 0건 신청지는 자연 또는 생산녹지이고, 이 지역의 건폐율은 20%이므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농지전용면적은 건축면적의 5배 정도면 충분함에도 적정면적의 최대 00배에서 00배정도까지 과다하게 농지전용허가 신청하였는데, 이를 적정한 것으로 심사처리 하였음.

42.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마을회 마을임대창고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000,000천원을 2회에 걸쳐 교부하였으나,
- 교부된 보조금 중 00,000천원은 △△동 429m²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토지소유자인 ○○○와 2014. 4. 25일까지 등기이전하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

43. 공연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 문화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은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가 설치되어 5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08. 6월에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났음에도 2014. 10월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4.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해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2012년 장승배기로 완충녹지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제출된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국토개발(조경) 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 이 경우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은 공사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인지 여부 등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규정에 맞지 않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함.

45.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공제)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18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음.

46.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조사 미실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완산구 민원봉사실에서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하여 과태료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해태사실에 대한 조사·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4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융자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완산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소멸시효(5년)가 완료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0건 00,000천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 등 체납정리를 이행하지 않음.(파산,사망,무재산)

48.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신호수 및 신호봉, 교통안전 시설물인 라바콘, 안전간판과 경광등 등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 총 00개의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함.

49. 미준공 건축물 실제사용 취득세 과세 누락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증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건축물을 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같은 법 제10조【과세표준】및 제11조【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소유 전주시 완산구 ■■■동 3가 0000-0번지 건축물(원룸)에 대한 취득세 00,000,000원 과세를 누락하였음.

50. 상속 부동산 취득세 과세 누락

-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같은 법 제10조【과세표준】및 제11조【세율】, 제15조【세율의특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 외 0명의 상속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동 건물 1건 취득세 0,000,000원을 과세 누락하였음.

51. 창업중소기업 고유목적 미사용 취득세 과세 누락

- 창업중소기업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에 의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같은 법 제10조【과세표준】및 제11조【세율】, 제15조【세율의특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의 고유목적 미사용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0,000,000원 과세 누락

52. 일시적 2주택 감면위반 취득세 과세 누락

-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같은 법 제10조【과세표준】및 제11조【세율】, 제15조【세율의특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감면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전주시 완산구 ■■■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0,000,000원 과세를 누락하였음.

53.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
- 그런데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 외 0개소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000,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하였음.

54.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8조 【세율】 ①항 2호 법인의 표준세율(기타법인 50,000원)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건설이 소유한 ㉢㉣동 소재 공사현장사무소에 대하여 주민세(법인균등분) 000,000원을 과세 누락 하였음.

55. 미준공 건축물 실제사용 재산세 과세 누락

- 사용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같은 법 제111조 【세율】 및 제112조 【재산세도시지역분】, 같은 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같은 법 제115조 【납기】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 ㉤㉥㉦ 소유 ㉧㉨동 3가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0,000,000원을 과세 누락함. (2012년 ~ 2014년도 분)

56. 지방세 체납자 관리(관허사업제한) 소홀

- 지방세법 제65조 【관허사업의제한】 규정에 의거 면허세포함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기타 행정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 면허에 대하여 관허 제한을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 외 00명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7. 세외수입(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관리 소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던 중 체납자의 예금 조회 및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공문에 따라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여야 하나,
- 체납자(0건 0,000천원)에 대한 주거래은행 등 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IV 우수 사례

1

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 전송

추진배경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사전 예방책 강화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를 전 청원에게 수시 발송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9월 ~
- 대 상 : 500여명(완산구 전 직원)
- 내 용 :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 전청원에 발송

□ 추진방향

- 사후 처벌은 물론, 사전예방책 강화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
-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적극 실천

□ 추진방법

- 매주 1회 이상 저녁시간 경고 문자 발송
 - 모임 및 회식 등 음주가 많은 목·금요일 집중 발송
- 인사발령 시기,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 발송

< 문자 예시 >

- ▶ 가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NO!NO! - 완산구청장 김천환 -
- ▶ 오늘도 술? 운전은 안되요! - 행정지원과장 안맹희 -
- ▶ 오늘 회식이신가요? 차는 두고 가세요 - 행정지원과 -
- ▶ 우리 아빠(엄마)는 음주운전을 절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 그간 추진사항

- 주1회 음주운전 예방 문자 발송 6회 3,000여건(1회 500건) : 2014. 9. 5 ~ 10. 10
 - 매주 부서별 예방문자 공모 및 선정 발송
- (채택문안 인센티브 부여 - 문화상품권 20,000원)

□ 기대효과

- 음주운전 사전예방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
- 음주운전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줄이고 가정경제 안정화에 기여

2013년 사랑이 넘치는 잉꼬부부와 만남시간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중 50년이상 금슬 좋고 아름다운 노후를 지내온 부부를 초청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가족기능이 강화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확산하는데 기여

□ 개 요

- 일 시 : 2013. 12. 17(화) 13:00
- 장 소 : 완산구청 4층 회의실
- 참여인원 : 40명 정도 (11쌍 부부 및 관계자)
- 행사내용 : 예식촬영, 인증서수여, 시낭송, 기념촬영 등
- 후 원 :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

□ 추진사항

- 대상자 선정 : 2013. 11월
- 잉꼬부부 만남의 시간 : 2013. 12. 17(화)
- ※ 전통 혼례 예식 촬영 -12.16일

□ 기대효과

- 황혼 이혼 증가 등 가족 해체 현상이 빈번한 요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시간 마련
-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부부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노후를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를 마련

다양한 나눔행사를 통해 연말연시『희망 나눔캠페인』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 속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개요

- 일 시 : 2013. 12. 23(월) 11:00
- 장 소 : 완산구청장실
- 참 석 자 : 37명(18개동 직원 및 주민대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사랑의 동전모금함』전달
 -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2013년 한해동안 주민들이 수수료 끝전 등으로 모은 성금을 기부
 - 18개동 동 직원 및 주민대표가 공동모금회에 전달
- 기 부 처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대효과

-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성금모금 참여분위기 확산
- 생활속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4. 3 ~ 12월
- 참여대상 : 49명
 - 멘토 : 구청 세무과 직원 : 31명
 - 멘티 : 세무업무 동 세무담당 공무원 : 18명
- 운영방법
 - 구 1개 팀과 3~4명의 동 세무 담당자와 멘토-멘티 결연
 - ※ 구 팀 구성원과 동 세무담당자와 1:1멘토-멘티 결연
 - ※ 구 세무과 담당이 멘토 팀장으로 관할 동 전체적인 조율
 - 정기분 부과 및 과세자료 일제조사 직무연찬 후 세무업무 조언
 - ※ 1:1 멘토-멘티간 수시로 업무상담 및 조언 등
 - 직원 1:1 결연이 동과 구 팀간 결연으로 인사 이동시 계속 운영

□ 추진계획

- 멘토.멘티 결연 추진
 - 기 간 : 2014.2.20. ~ 12. 31.
 - 내 용
 - . 구 세무과 6급 및 2년차 이상 세무업무 종사자
 - . 동 전 세무 담당 공무원
 - ※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구.동 멘토.멘티는 신규 담당자로 변경 유지

□ 기대효과

- 구.동 주민센터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업무 공백 최소화

□ 개 요

- 기 간 : 2014. 4 ~ 5월(2개월)
- 대 상 : 각 동 주민센터 주민, 자생단체, 통장, 회사, 직능단체회원(자원봉사단체 등)
- 장 소 : 각 동 주민센터, 회사 등
- 내 용 : 2014년 「새 지방세법」, 변경된 수납제도, 납세자 편의 시책 , 위택스 납부 , 시정 주요현안, 관내은행 수납시설 점검 등
- 강 사 : 세무과장 또는 각 담당(6명 6개반) 『붙임』
- 일 정 : 6개 반별 3개동 분담

□ 추진계획

- 동별 방문일정 의견수렴 : 2014. 3. 26.(수)
 - 대상 : 각 동 주민센터 주민, 회사,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
(시민 참여자 20인 이상)
 - .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 시민 중심
 - ※ 설명회 실시 대상 선정(일자, 시간, 인원) : 각 동
- 설명회 교재 작성 : 2014. 3. 26.(수)
 -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 납부제도 등 4페이지 이내로 자체 제작

□ 기대효과

- 지방세 설명회를 통한 변경된 지방세법 및 납부 제도 홍보
-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은 세정구현

도로 등에 설치되어 수거 된 불법 현수막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재생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원 절약 인식 확산 및 폐기 처리 비용 절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도로 등 광고물 부착 금지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 수거물량 : 38,405개(2012년도 기준)
- 필요예산 : 500천원(재봉틀 1개)
- 재활용품 : 농작물 건조장판, 쓰레기 비품 및 수거 가방 등
 - 농작물 건조장판 : 깨·쌀 잡곡 등을 태양에 건조할 때 쓰는 천 대용
 - 쓰레기 비품가방 : 자원봉사활동 청소 시 비품 및 쓰레기 봉투 대용
- ※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버려지는 물건으로 만드는 명품’

□ 그간 추진상황

- 종류별 보급실적(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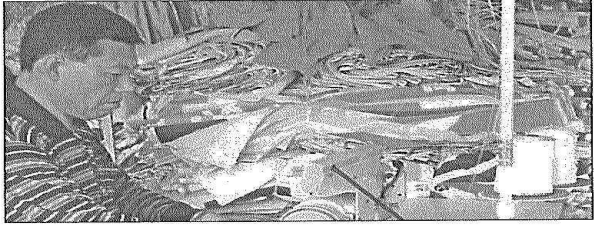
합 계	대형부직포	멧돼지 침입 방지막	고추 지주대	비고
29,220개	500개	18,900개	9,820개	

전주일보 2013년 05월 03일 금요일
013면 함께하는세상(지역)



완산구, 불법 현수막 완주지역 무료 공급 전주시 완산구는 그 동안 폐기 처리해왔던 불법 현수막을 완주지역 신창 농가에 농사 자재로 재활용해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5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전주매일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014면 사람들



1석3조 효과 완산구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곡물이나 고추 등을 말리는 건조 깔판으로 업사이클링하여 필요한 농가에게 전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재활용품으로 탈바꿈시켜 환경오염까지 방지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식 기자

□ 기대효과

- 현수막 폐기물 처리 비용 축소로 예산 절감에 따른 재정 증대
- 업사이클링 제품 무상 보급으로 시민들의 재활용품 사용 확산 및 환경보호 인식 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후 무상 서비스(A/S)반” 운영**□ 추진배경**

- ‘09.4월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도입으로 주민들에게 수거용기 무상지급
- ▶ 이후 파손, 교체, 분실 등 추가 용기가 필요할 경우 유상구입 원칙
- 수거과정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용기 소모품【내통(거름망), 배출구 마개, 뚜껑, 손잡이 등】이 파손되면 별도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기 전체를 재 구입해야 하는 시민불편 가중

- ✓ 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급 시스템 : 제조업체 → 구청구입 → 동사무소 판매 및 지급
※ 용기 제조업체는 원거리에 있어, 제조업체 A/S 용이치 않음 : 경기도 등
-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판매단가
3L·5L : 7,000원, 10L : 10,000원, 70L : 30,000원, 120L : 46,000원

▶ 용기 파손 및 배출구 마개 분실은 침출수 누출에 의한 하절기 악취발생으로 주민 불편 초래

▶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또는 수거요일이 아닌 날인데도 우후죽순 도로변과 집 앞에 방치된 용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모 도심 미관 저해, 도난, 차량·취객에 의한 파손 사례 빈번

※ 중대형 용기의 교체 비용은 만만치 않은 고비용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도래 및 타인에 의한 파손, 분실책임을 무조건 쓰레기 수거업체 전가 등 용기 배상 분쟁

[전주시 완산구 용기 배부 현황]

2014. 7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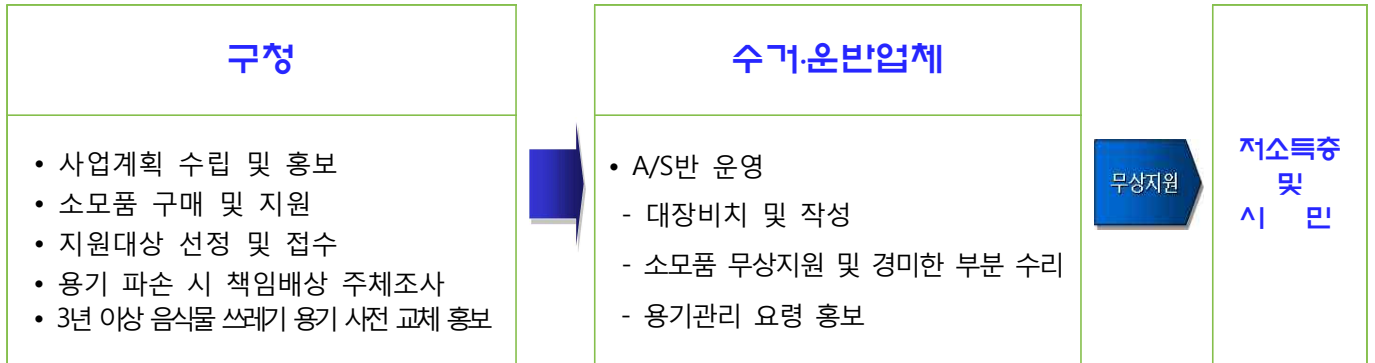
세대수	용기배부						
	총배부수	3ℓ	5ℓ	10ℓ	20ℓ	70ℓ	120ℓ
139,798세대	57,332개	14,219	21,499	3,210	1,500	4,183	12,721

□ 사업개요

- 사업명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후 무상 서비스제(A/S)반 운영**

- ✓ 폐기물 분야에도 저소득층 및 주민의 편익과 수요에 부응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상호협력, 용기 사후 무상 서비스(A/S)반 구성·운영
- ☞ 운영기간 : 2013. 9월 ~ 지속, A/S반 구성 : 1개반 5명(기업 3, 공무원 2)
- ☞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 문전수거 / 수집운반 민간 위탁

- 중점 추진사항 : 내통, 배출구 마개, 뚜껑, 손잡이 무상지원 및 홍보, 제도 등
- 세부 추진방법



□ 추진경과

【2013년도】

- ‘13. 4 : 완산구 환경-콜 현장 멘토링 서비스제 운영 간담회 개최
 -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환경리더 6명 위촉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의한 주민 불편 사항 근원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제기

《 Tip 》

◆ 다년간 노하우가 풍부하고 친절·성실한 폐기물 수거업체별 환경-Leader를 위촉하여 환경-Leader들이 소속 직원 전원을 멘토화 하고, 고질 취약지역 주변 가가호호 방문 제도 및 불법투기자 적발시 처분위주 보다는 주민 제도 등 가해 (생활기초 질서)의식을 인식시켜 주는 서비스 즉 분야별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등)로 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서 도움을 주는 민·관 파트너

- 환경-콜(E-Call)현장 멘토링 서비스-

- ‘13. 5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벤치마킹 / 2명 참여
- ‘13. 7 : 완산구 환경- 콜 현장 멘토링제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 홍보강화를 위한 신속알림 에코-그린 메시지(EGM)서비스제 도입 필요성 제기
 - ⇒ 신속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공동주택
- ‘13. 8 : 세부추진계획(안)수립 및 전주시 상상동아리 연구과제 선정
- ‘13. 9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후 방문 무상 서비스제 시범 운영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위주로 시행 ⇒ 신청 전무로 일반시민 확대 시행
- ‘13. 12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후 방문 서비스 공로자 표창 3명

【2014년도】

- '14. 3 : 완산구 환경-콜 현장 멘토링 서비스제 운영 간담회 개최
 -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환경리더 3명 신규 위촉
 - '13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후 방문 서비스제 성과 보고

✓ 2013년 추진실적 : 525세대 After Service(내통, 거름방 380/ 배출구마개 145)

- '14. 4 : 음식물쓰레기 사후방문 서비스제 보완, 확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특수시책 선정 및 추진

2013년까지는	2014년부터는
○1개반 3명 ○내통, 거름방, 배출구마개 ○저소득층, 소외계층	○1개반 5명 ○내통, 거름방, 배출구 마개, 중대형 뚜껑 및 손잡이 ○저소득층, 소외계층, 일반시민 ○내구연한 1년전에 교체토록 사전 안내 등

- '14. 6 : 환경부 주최 2014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
 - 공무원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 수상 : 한국폐기물 협회장상
- '14. 8 : 음식물쓰레기 사후방문 서비스제 상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
- '14. 9 : 홍보방안 강화를 위한 신속알림 에코 그린-메세지 서비스제 시행
 - 공동주택 245개 단지(85,706세대)

□ 주요성과 및 요인

- '14 상반기 추진실적 : 455세대 완료

구분	총계	소형용기 내 통 (세대)	중대형용기 뚜 껑 (세대)	중대형용기 손 잡 이 (세대)	배출구마개 (세대)	홍보실적(세대)	
						용기교체안내	용기배출요령
총 계	455	96	48	24	287	500	2,800
3L	124	35	-	-	89		
5L	179	43	-	-	136		
10L	80	18	-	-	62		
60~120L	72	-	48	24	-		

※ 시민의견

-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및 해소하여 시민 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로 정착 요함
- 현장행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 완산구 환경-콜 현장 멘토와의 상호 소통에 의한 제안 사항을 행정예 접목하여 중앙부처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 현장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호평

▶ 아이디어 창안 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중 전국 최초로 행정예
접목 및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여 주민
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

▶ 행정편의에 맞춰 시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불편
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 선제적 원스톱 서비스 시행

※ ‘13년 전주시 상상동아리 우수 동아리 선정 및 수상에 기여 : 자연사랑 (동아리명)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시간 준수, 수거된 후
집 및 사업장 안에서의 관리는 배출자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용기 집·사업장 안에 들여놓기 운동과 클린행정에 대한 범시민적
실천 다짐 분위기로 사회전반에 확산

▶ 주민(배출자) 스스로 수거용기의 관리 책임의 공감대 형성

▶ 용기파손 분쟁 최소화를 위한 사전점검 및 무상보수 등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문화 개선에 기여

○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수거업체 참여에 의한 혁신의 성과 거양

▶ “환경을 지키고 열매를 따서 나누어 가지는” 상생의 (Win-Win) 민·관 관계 정립

▶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함께 함으로써 민·관 유대 강화, 민간 협력 활성화에
부응, 민원저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토대 마련

▶ Man to Man 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개선사항 on-line, off-line으로 상호 공유,
환경관리 역량 강화

○ 추진실적 취합·분석(반기별), 성과관리를 통해 공로자 표창 산업시찰
기회 부여(소속업체)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긍심 고취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무상 서비스제 운영 : ‘14. 8월 ~ 11월

○ ‘14년 전주시 상상동아리 성과 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 ‘14. 12월

○ ‘14년 완산구 환경-콜 멘토링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15. 1월중

▶ 전주시 전체로 파급 효과 계기 마련을 위한 정책부서에 건의, 사례 보고서 발간 등

-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축물의 생애를 증가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주요내용
 - 건축주가 본인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CD로 보유하도록 하여 향후 건축행위 및 하자보수 등에 활용
 - ※ 기본설계 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설비도서(위생·난방·전기·소방·통신)
- 추진방법
 - 신축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시 용역업체로부터 설계 도면이 담긴 CD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승인시 교부

□ 추진상황

- 업무대행 건축사 행정지도(협회에 안내문 발송) -- '14.01.07.
- 건축허가시 조건(안내문) 부여 ----- '14.01.08.
-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 '14.01.22.
- 건축물 설계도서 CD 교부(215개) ----- '14.2.1~9.30.

□ 금후계획

- 건축주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등에 활용토록 사용승인시 설계 도서가 담긴 CD 지속 교부